

직업건강협회와 함께
날마다 건강하게!

ISSN 2635-8425

직업 건강

제언

해빙기
사망재해감소
안전보건관리
방안

2021
Vol.28 No.2

연속기획
스마트 개인보호구

직업건강 우수사례

워라밸을 향한
'2go Health'



이달의 보건관리자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보건관리자 서강녕

일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직업건강협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입니다.

VISION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MISSION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직업건강 전문기관

핵심가치



근로자 존중



건강한 환경



소통과 화합



전문성 향상

직업건강협회와 함께
날마다 건강하게!

직업 건강

March 2021 Vol.28 No.2



발행처	(사)직업건강협회
발행일	2021년 3월 12일 (통권112호)
발행인	김숙영
편집인	장인순
편집위원	장인순, 김정임, 김지윤, 권윤정 권은중, 엄규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22, 서은빌딩
전화번호	02)716-9030
팩스	02)716-9034
발간등록번호	ISSN 2635-8425



· C · O · N · T · E · N · T · S ·



- 
- 04 **제언**
해빙기 사망재해감소 안전보건관리 방안
| 김증호(직업건강협회 전무, 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
 - 08 **2020년 협회 사업보고**
폐수 배출시설 보유사업장 밀폐공간 실태조사
| 장형인(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사업부 차장)
 - 15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12**
안전보건 관리체계
| 김윤배(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산업안전학과장)
 - 23 **심리상담**
입은 하나, 귀는 두 개인 이유
| 구지은(직업건강협회 심리상담사)
 - 26 **건강상식**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필요할 땐 수건 스트레칭으로 활력 찾기
| 서재근(대전병원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 30 **연속기획**
스마트 개인보호구
| 김수근(의학박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34 **이달의 보건관리자**
3월 표지모델 인터뷰
| 서강녕(LG 디스플레이 구미공장 보건관리자)
 - 35 **직업건강 우수사례**
워라밸을 향한 '2go Health'
| 이현구(영남대학교병원 보건관리자)
 - 41 **직업건강 Q&A**
 - 42 **직업건강연구동향**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고찰
 - 43 **센터소개**
경기서부 보건안전센터
 - 45 **전국 산업보건단체 소개**
한국공공조직은행
 - 48 **국내직업건강정보**
 - 50 **해외직업건강정보**
 - 52 **신간안내**
 - 53 **협회소식**
 - 70 **직업건강협회 임원명단**
 - 81 **One Page Sheet**

제언

해빙기 사망재해감소 안전보건관리 방안



김종호

직업건강협회 전무
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국민 건강관리에 집중돼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해빙기를 맞아해 떨어짐, 넘어짐, 무너짐, 질식 등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건설품질 및 안전확보와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예방 근로자 건강관리 실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사전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사전적 의미로 해빙기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구체적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2~4월을 전후로 기상상황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는 왜 위험할까? 기온이 0°C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 : 동상)'이 발생하였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되었던 지반 융해(Thawing)로 연약화 되면서, 시설물 하부구조(기초)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 현황〉

최근 5년간 해빙기(2~4월) 건설현장 사고성재해는 '15년~'17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18년 다소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사고부상자는 '17년~'18년 소폭 감소(5,139명→4,902명)하였으며, '18년~'19년에 다시 증가(4,902명→5,375명)함
- 사고사망자는 '15년~'17년에 증가(91명→140명)하였으나, '17년~'19년에는 감소(140명→94명)하는 추세임

“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는 여러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인재경영의 완성은 건강경영이며, 건강경영하는 자만이 안전의 CEO이다.

”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발생 형태별 사고부상자는 떨어짐, 넘어짐, 물체에 맞음, 절단·베임·찔림, 끼임 순임

- '19년 해빙기(2월~4월)와 전체(1월~12월)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해빙기에 떨어짐과 넘어짐 비율이 다소 높음

해빙기에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절·성토면내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비탈면 붕괴,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 시 지반 연약화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철근부식, 배부름 발생 등 축대·옹벽 붕괴,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 등의 원인에 의한 구조물 붕괴, 산악지형의 바위틈, 계곡, 바위능선 아래에서의 낙석, 낙빙 등이 있다. 따라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이것만은 꼭 점검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해빙기에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추락)과 무너짐(붕괴)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사전 점검실시 내용으로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상태 점검과 철골 작업 시 근로자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 방호망 설치 여부 점검,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처짐, 풀림, 고정 등)사전 점검,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었는지 점검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주변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를 미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미지급 및 미착용 할 경우 추락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고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흙막이가 시설 배면 침하로 지중 매설 물(상수관, 가스관 등)의 손괴 시 2차재해 위험은 없는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강풍에 따른 무너짐, 넘어짐 등 재해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상청 기상자료에 따르면 연간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발생한 74일 중 해빙기가 26일(약 35%)을 차지하고, 해빙기 3개월 평균풍속이 연 평균 풍속보다 평균 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요인으로는 강풍에 의한 건설기계·장비, 가시설물 등의 넘어짐이나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거나, 낙하하여 맞음, 수직 거푸집·철근 등이 강풍에 의해 무너짐(넘어짐) 등이다.

안전한 작업방법으로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 쎈바람 이상 시 옥외작업(자재운반, 마감작업 등) 지양,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 처리 또는 고정, 텐 버클 및 와이어 등을 활용하여 고정하고 각관 등의 파이프를 설치하고 하부 뼈기 목으로 고정하여 버팀대 설치 등으로 수직 거푸집·철근 등의 전도방지 조치, 설치된 외부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결속 및 고정 상태 점검, 비계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점검,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상태 점검, 간판 및 수직 보호망 등이 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조치, 가설사무실 지붕 등의 고정상태 및 비상 시 이동계획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밀폐공간 질식 사망재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해빙기는 지하 전력구·통신구·도시가스 정합조·하수도·상수도 등 맨홀 및 피트, 지하저수조·고가수조, 하수(폐수)처리장·정화조·반응조 등 밀폐공간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질식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밀폐공간작업은 대부분 외주처리하거나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소결핍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를 이행하고 출입 전(작업 전)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결과 안전작업 범위 여부확인과 지속적인 환기(급기·배기팬 가동)와 공기호흡기 또는 에어라인 공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고 안전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때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도 매우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겨울에는 신체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여름보다 10%, 봄·가을보다는 20~30% 가량 더 많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 몸은 자연히 지치게 된다. 한겨울 내내 건강관리를 잘해오다가 날이 풀렸다고 소홀해 지면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환자 등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뇌·심혈관질환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릴 만큼 발병 전 전조증상이 드물다.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씩 걸으면 심장 마비를 37% 이상 예방 할 수 있다고 한다. 짜게 먹는 것을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금연을 실천하는 것 역시 뇌·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적 환경과 같은 업무 관련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심혈관질환의 주된 원인이고,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해빙기는 위축된 근육과 골격의 가동범위를 갑자기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작업자세와 중량물취급 작업, 단순반복 연속작업과 용접·신체부위를 물체에 접촉하는 작업, 한 동작에 멈추면서 하는 정적인 작업 등 다양한 작업과 돌관작업이 증가하면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온변화에 따른 급격한 작업상황과 작업조건 변화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과 겨울 동안 떨어진 식욕과 체력을 보충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고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벼운 온욕으로 수축 된 몸을 풀어주고 감기 예방을 위해 보온과 가습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는 여러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인재경영의 완성은 건강경영이며, 건강경영하는 자만이 안전의 CEO이다. 

2020년 협회 사업보고

폐수 배출시설 보유사업장 밀폐공간 실태조사



장현인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사업부 차장

우리나라에서 매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 사망자가 20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177명 중 93명(52.5%)으로 일반사고 사망률인 1.2%보다 40배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2019년 경북 영덕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폐수 집수조 내부작업을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얼마 전 설 연휴 중 인천의 공장에서 폐수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로 인해 1명은 사망, 1명은 중태에 이르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을 보유한 질식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밀폐공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질식 재해 예방수칙 3대 핵심사항을 안내, 기술지도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고 작업 안전보건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질식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망 ZERO'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 사업 추진 방법

1 밀폐공간 실태조사 및 위험도 평가

- 밀폐공간 보유현황, 밀폐공간작업 수행현황 확인
- 집수조 펌프 수리 작업 확인 : 펌프 유무, 위치, 수리 장소, 수리 작업자, 작업주기 등
- 위험 수준 평가

2 밀폐공간 질식 재해 관련 자료 제공 및 안내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핵심사항 전파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항 점검지도(Patrol)
- 기술자료 제공 및 활용 요령 지도 : 밀폐공간 출입 금지 표지, 질식 재해예방 자료

3 밀폐공간 작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 밀폐공간 유해, 위험 상황 신고, 상담 전화 안내
- 재정지원 사업, 위험성 평가 등 공단 사업 안내
- 근로자 건강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법 안내

4 밀폐공간 작업 사전예방 관리

- 고위험 사업장 등 긴급 위험 사업장 일선기관 통보
- 사업 수행 후 관련 자료 송부 및 동향 파악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관련 지역 인프라 안내



사업 추진 결과

1 총괄

- 수행 실적 : 10,033개소 수행 완료

구분	목표	수행실적	달성을
총계	10,000	10,033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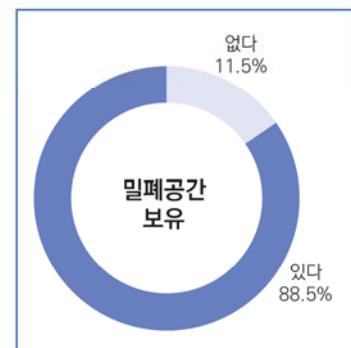
2 실태조사 결과분석

가. 밀폐공간 현황

- 밀폐공간 보유 여부 및 종류

10,033개소 중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은 8,878개소(88.5%)로 조사되었음. 이 중 폐수보관장소인 집수조, 침전조, 유량조정조, 농축조, 기타 탱크 등의 시설이 8,375개소(8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밀폐공간 보유	밀폐공간 종류			
	집수조 등	정화조	맨홀	기타
8,878	8,375	1,628	624	640
88.5%	83.5%	16.2%	6.2%	6.4%



- 밀폐공간 작업 여부 및 작업 내용

-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8,878개소 중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6,652개소(74.9%)로 나타났음. 밀폐공간 작업 내용은 청소 4,847건(72.9%), 점검 3,956건(59.5%), 수리 3,311건(49.8%), 기타 444건(6.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작업은 폐수 및 침전물 수거, 가동 및 환기 등임.

- 밀폐공간 작업 주체는 자체 1,823개소(27.4%), 외주 3,989개소(60.0%), 자체 및 외주작업을 모두 수행하는 사업장은 840개소(12.6%)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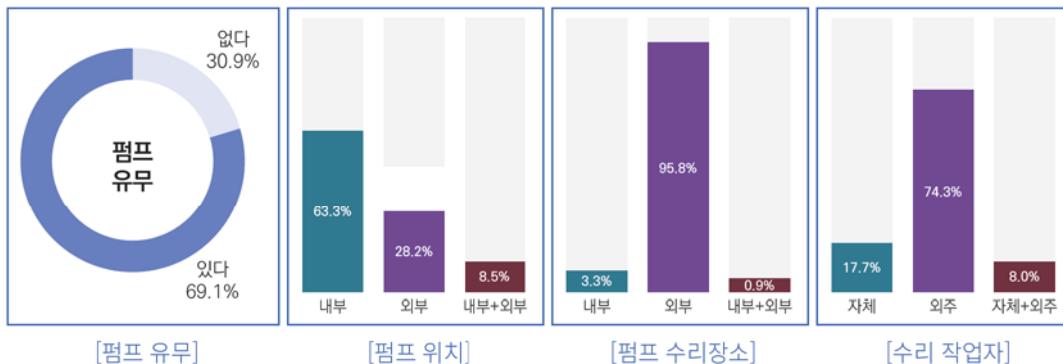
밀폐공간 작업여부	밀폐공간 작업 내용				작업자		
	청소	수리	점검	기타	자체	외주	자체+외주
6,652	4,847	3,311	3,956	444	1,823	3,989	840
74.9%	72.9%	49.8%	59.5%	6.7%	27.4%	60.0%	12.6%



나. 폐수보관장소 펌프 설치 현황

- 밀폐공간 내부의 펌프 수리 시 질식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 함.
 -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8,878개소 중 펌프가 있는 사업장은 6,138개소(69.1%)이고, 펌프 설치 위치는 내부가 3,881건(63.3%), 외부가 1,733건(28.2%), 내부 및 외부 모두가 524건(8.5%)으로 나타났음.
 - 펌프 수리장소는 외부작업 5,878건(95.8%), 내부작업 205건(3.3%), 내부 및 외부작업이 55건(0.9%)으로 대부분 외부에서 이루어짐.
 - 펌프 수리작업 주체는 외주작업 4,561개소(74.3%), 자체 작업 1,085개소(17.7%), 자체 및 외주 작업 모두 수행하는 사업장이 492개소(8.0%)로 나타났음.

펌프 유무	펌프 위치			펌프 수리장소			수리작업 주체		
	내부	외부	내부+외부	내부	외부	내부+외부	자체	외주	자체+외주
6,138	3,881	1,733	524	205	5,878	55	1,085	4,561	492
69.1%	63.3%	28.2%	8.5%	3.3%	95.8%	0.9%	17.7%	74.3%	8.0%



다. 위험 수준 평가 결과

- 질식사고 위험성 인지도

- 아래 3개 항목 4개 문항에 대해 질문에 응답한 개수로 평가 후 점수를 부여함.
(3번과 3-1번은 모두 응답하여야 적정으로 인정)

질문 1) 밀폐공간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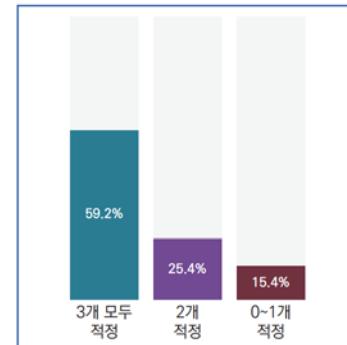
질문 2) 우리 사업장에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필수)

질문 3) 집수조 등 밀폐공간에 안전조치 없이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질문 3-1)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다면 잠시 숨을 참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 '3개 모두' 적정으로 응답한 경우 5,935개소(59.2%), '2개' 적정으로 응답한 경우 2,551개소(25.4%), '0~1개' 적정으로 응답한 경우 1,547개소(15.4%)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1.53점, 표준편차는 1.94점으로 나타났음.

질식사고 위험성인지			
3개 모두(0점)	2개(3점)	0 ~ 1개(5점)	M±SD
5,935	2,551	1,547	1.53±1.94
59.2%	25.4%	15.4%	100%



[질식사고 위험성인지]

- 질식사고 위험작업 수행 시 위험 관리 방법 인지도

- 아래 5개 항목 6개 문항에 대해 질문에 응답한 개수로 평가 후 점수를 부여함.
(2번과 2-1번은 모두 응답하여야 적정으로 인정)

질문 1)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나요?

질문 2)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환기를 하시나요?

질문 2-1) 환기는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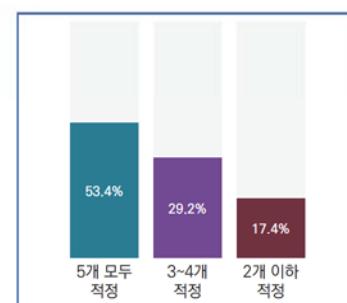
질문 3)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나요?

질문 4) 환기나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을 한 후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들어가나요?

질문 5) 만약, 밀폐공간에서 동료 근로자가 쓰러진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 '5개 모두' 적정으로 응답한 경우 5,355개소(53.4%), '3~4개' 적정으로 응답한 경우 2,933개소(29.2%), '2개 이하' 적정으로 응답한 경우 1,745개소(17.4%)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1.75점, 표준편차는 1.98점으로 나타났음.

질식사고 위험작업 수행 시 위험 관리 방법 인지도			
5개 모두(0점)	3 ~ 4개(3점)	2개 이하(5점)	M±SD
5,355	2,933	1,745	1.75±1.98
53.4%	29.2%	1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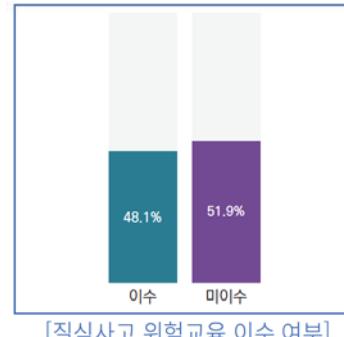


[질식사고 위험작업 수행 시 위험 관리 방법 인지도]

- 질식사고 교육 이수 여부(사업주)

- 공단 주관의 질식 예방 교육에 참석한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산업안전 보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이 있는 경우도 인정하였음.
- 사업주(또는 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은 4,826개소(48.1%), 미이수한 사업장은 5,207개소(51.9%)로 미이수 사업장이 3.8% 더 많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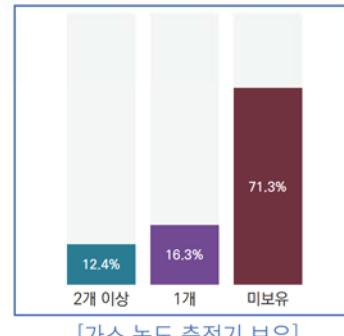
질식사고 위험교육 이수 여부(사업주)		
이수(0점)	미이수(10점)	M±SD
4,826	5,207	5.19±4.99
48.1%	51.9%	100%



- 가스 농도 측정기 보유

- 산소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를 보유한 경우 인정. 다만, 산소 결핍 위험만 있는 장소는 산소농도측정기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하였음.
- 외주업체가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경우, 외주업체가 가스 농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도급사업주가 작업 때마다 확인조치하는 때에만 인정하였음.
- '2개 이상' 보유사업장은 1,241개소(12.4%), '1개' 보유사업장은 1,634개소(16.3%), '미보유' 사업장은 7,158개소(71.3%)로 10개 소 중 7개소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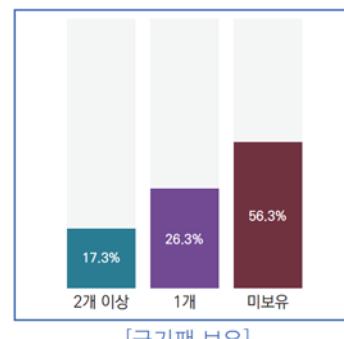
가스(산소, H2S 등) 농도 측정기 보유			
2개 이상(0점)	1개(5점)	미보유(20점)	M±SD
1,241	1,634	7,158	15.08±7.87
12.4%	16.3%	71.3%	100%



- 급기팬 보유

- 외주업체가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경우, 외주업체가 공기 주입 팬을 보유하고 있고 도급사업 중간 작업 때마다 확인조치를 하는 때에만 인정하였음. 공단에서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하였음.
- '2개 이상' 보유사업장은 1,739개소(17.3%), '1개' 보유사업장은 2,641개소(26.3%), '미보유' 사업장은 5,653개소(56.3%)로 10개 소 중 5개소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급기팬 보유			
2개 이상(0점)	1개(10점)	미보유(60점)	M±SD
1,739	2,641	5,653	36.44±7.87
17.3%	26.3%	56.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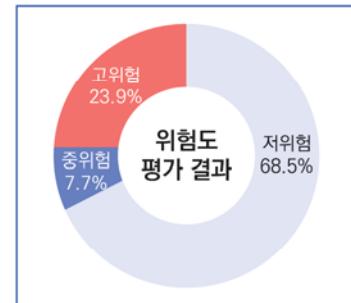


• 위험도 평가 결과

- 저위험군은 6,870개소(68.5%), 중위험군은 770개소(7.7%), 고위험군은 2,393개소(23.9%)로 나타났음. 이중 저위험 사업장 6,870개소 중 61점 이상이라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업장 중 밀폐공간이 없어 저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총 659개소임.
-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데 평균점수는 59.9점, 표준편차는 35.7로 나타났음.

※ 60점 미만 : 저위험군, 61점~80점 : 중위험군, 81점 이상 : 고위험군

위험도 총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M±SD
6,870	770	2,393	59.9±35.7
68.5%	7.7%	23.9%	100%



[위험도 평가 결과]

〈제공콘텐츠〉



[출입금지 스티커]



[위험 공간 태그]

〈콘텐츠 배포 사진〉



[탱크]



[밀폐 공간]



[저장 장소]



〈우수사례〉

- 충남지역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 시 H₂S 가스 농도가 45~140ppm 사이로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 후 바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 이를 보고하였고, 바로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부 조사 및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음. 이를 전국 센터 관리자와 수행요원에게 특별사례로 공유하여 수행업무 관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 또한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사업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였고, 우수 수행요원을 포상하여 추후 협회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음.



결론 및 제언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밀폐공간 작업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를 위해서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강조하였다.
-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질식사고 위험성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53점, 질식사고 위험작업 수행 시 위험관리방법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5점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질식사고 위험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8.1%로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가스농도 측정기를 미보유한 사업장은 71.3%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급기팬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도 56.3%로 절반이 넘었다.
- 사업장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 대여가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 밀폐 관련 OPS는 협회지 맨 뒷장에 수록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바로알기 12

안전보건 관리체제

김윤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산업안전학과장

『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의 저자

『2020 산업안전보건법』의 저자



●●●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1 의의

- 사업주는 압력용기, 비계의 조립·해체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40조제1항). 이러한 작업 22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다.
- '규칙'의 취업제한과는 별도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3항). 이 교육을 특별교육이라고 한다.

2 특별교육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22종 작업과 별도로, 고압실내작업 등 40개 작업이 정해져 있고, 작업의 유형, 작업별 교육 시간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3 특별교육시간

- ①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8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을 제외한 39개 유해·위험 작업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40개 유해·위험 작업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 * 단기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②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고,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③ 특별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에의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특별교육 대상작업(40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교육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2호).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⑤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4 특별교육내용

특별교육의 교육내용은 40개 작업 공통내용과 작업별 개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시행규칙 별표5).

5 벌칙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특별교육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2항제1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의의

건설 현장에 채용되는 인력은 공기(工期) 동안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인력이어서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 이전에는 '개별'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2011년 7월 본조 신설로 건설 '업종' 차원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건설 현장에 종사할 일용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한번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고 어느 현장에서나 일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교육내용과 시간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별표4, 5).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2시간 1시간

3 교육기관 등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시행령 제40조, 별표10)을 갖추어 등록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한다(법 제31조제1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회당 50명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구 착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등 상세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규정 별표4),

4 벌칙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의의

-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안전보건전문기관 종사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이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32조제1항).
- 여기서 말하는 '직무'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고, 의무 이행 주체가 사업주와 전문기관의 장이므로 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비용도 사업주와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의 시기와 주기

교육의 시기와 주기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신규교육: 선임·위촉·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교육시간

교육대상별 신규 및 보수 교육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별표4).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송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교육내용

교육대상별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별표5).

5 직무교육의 면제

가. 신규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중 관리감독자로 일정 기간(3년~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시행령 별표4의 6, 7호 해당자)

나. 보수교육 면제: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① 다른 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 ②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해당 법령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 ③ 보수교육 이수 의무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제2항).
 -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2.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
 - 3. 안전공단이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전문화교육 이수(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6 벌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6항제1호).



안전보건교육기관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1 의의

각종 안전보건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원 및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다.

2 교육기관 등록 요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으로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10).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법인' 또는 '학교'로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40조제2항, 별표11).
- 직무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로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40조제2항, 별표12).

3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 평가기준: ①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②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③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공단이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결과공개: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17조제7항).

4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사유: 교육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① 또는 ②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4항, 시행령 제40조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재등록 금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안전보건 교육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보론(補論)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1981)부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90년 7월에 전면 개정하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게 하였고,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제(2016.10.)가 시행되면서 자체 교육만이 아니고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설 현장에 종사할 일용근로자 대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2011년부터 제도화되었다.
-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184개(2021.1.29.)가 등록기관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직무교육기관은 31개소(2021.1.29.),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기관은 48개소(2020.8.2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은 81개(2020.7.31)가 등록되어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을 상대로 등록된 교육기관이라고 사칭(詐稱)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시기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안내'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 2개월 간격으로 갱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유용하다.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전문기관 종사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직무교육에 대하여 만족도가 저조하고 불만이 많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무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특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교육을 이수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수요, 즉 기업의 교육수요를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주체를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아닌 교육 수요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들에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6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사업장이면 어디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괴롭힘 예방 교육」,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6대 법정 의무교육을 자기네 가 맡아 한 명의 강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공문(제목 예시: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하루에 끝내기”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업장에 보낸다. 이런 문서를 받으면 중소 영세 사업장일수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과연 기대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심리상담

입은 하나, 귀는 두 개인 이유



구지은

직업건강협회 심리상담사

예전에 자체 국비로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관에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담사과정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 인기 있는 과정이어서 경쟁률이 높게는 5대1이 넘을 때도 많았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선별을 위해 2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마지막은 면접이었습니다. 과정 이름에 '상담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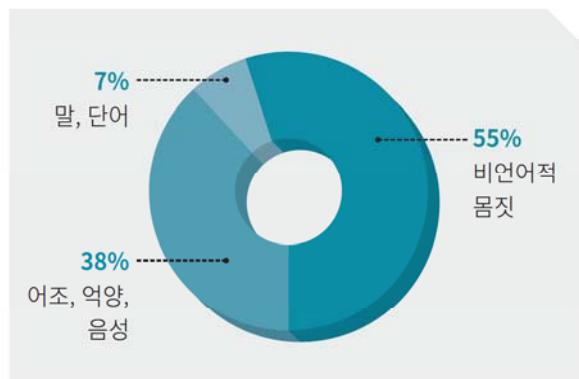
"저는 평소에도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과정을 배우지 않았어도 상담사라면 가장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번에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 얼마나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말'에는 들리는 말과 들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담자가 하는 말과 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였던 알버트 메라비언 (Albert Mehrabian)은 메시지 전달요소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즉, 대화든, 강의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상대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각 요소들마다 얼마만큼 전달되는지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중 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단 7%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조, 억양, 음성을 통해 38%가 전달되고, 나머지 55%는 비언어적 몸짓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출처 : Albert Mehrabian, The Law of Mehrabian, 1971.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한 번씩 내가 얘기하려는 것을 어떤 단어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정도 쓰고, 손짓, 발짓을 통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도 합니다. 즉, 내담자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은 말하지 않는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가 말한 것의 의미를 내담자가 원하는 것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이 진정한 ‘잘 들어주기(경청)’의 핵심입니다.

보건관리자로서 사내 직원들을 만날 때 그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은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의 7%만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까지 들어야 그들이 하고 싶은 온전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적극적 경청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자가 되기 위한 6가지 요소, L·I·S·T·E·N

- **L(Lean Forward)**: 몸과 마음을 상대에게 기울입니다. 특히 몸을 내담자 쪽으로 기울여 “당신의 말이 듣고 싶어요. 관심있어요. 흥미로워요”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I(Interest)**: “당신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라는 호기심과 관심의 표현을 합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반응하고, 내담자가 말한 내용을 반복하고,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그가 한 말을 요약 정리해서 명료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S(Space Clearing)**: 상담자로서 마음의 공간 비우기입니다. 이것은 상담 전 자신만의 의식(ritual)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저는 3~5분 동안 명상을 주로 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 적당한 침묵과 편안한 표정, 유머 등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판단 없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 **T(Tic-Tac)**: 시계의 똑딱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요?”, “아, 하, 응” 등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 **E(Eye Contact)**: 눈 맞춤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의 움직임까지 읽고 공감하려는 자세입니다.
- **N(Nodding)**: 내담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표현이며, 더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담자가 기다리는 반응에 대한 일종의 응답과 같습니다.

출처: 코칭핵심역량, 138P, 학지사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할 때 온전히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담자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의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온몸으로 들어야 할까요? 가족이든, 친구든, 회사에서 만나는 직원이든 대화할 때 경청해야 할 3가지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경청의 핵심 3요소

상대방이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며 서 온몸으로 경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에너지 변화, 반복, 불일치입니다.

경청으로 감지해야 할 첫 번째 순간은 에너지 변화의 순간입니다. 즉, 말하는 중에 내담자의 에너지의 높낮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지금보다 좀 더 배워야 해요”라고 말할 때 어깨가 처지거나, 시선을 내리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좀 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라고 되물어 본다면 내담자는 훨씬 더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말보다 비언어적 몸짓이 주는 에너지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의 순간은 반복입니다. 내담자가 특정 단어를 반복하여 말한다면 그 속에는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네 번 반복하셨어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와 가치, 비전 등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간은 불일치입니다. 한 내담자가 “보란 듯이 성과를 내놓고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퇴사하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것’은 서로 불일치합니다. 어쩌면 이 분은 회사를 위해 노력하지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게 해준다면 자신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에너지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담자의 이야기가 다람쥐 셋바퀴 돌 듯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경청을 통해 말 속의 불일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일치되는 상황에는 게임이나 오락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학식을 쌓겠다고 말하는 경우,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경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늘 과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 반복, 불일치가 느껴질 때의 반응〉

- **에너지 변화:** 지금 말씀하실 때 에너지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반복:** 지금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네 번 반복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 **불일치:** 정확한 것과 유연한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코칭의 정석, 36~37P, Beautiful Human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중요하고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관 중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손, 발 모두 두 개인데, 유일하게 입은 하나입니다. 두 개인 기관은 대부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유일하게 입만 내 것을 말로써

여과 없이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두 발로 상대에게 다가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마시고, 두 눈과 두 귀를 활용하여 온몸으로 경청하기를 연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입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상식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필요할 땐 수건 스트레칭으로 활력 찾기

글 서재근

대전병원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시범 이아랑, 강고은, 흥은비

대전병원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사진 강태규 / 정리 김주희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자연히 활동량이 줄어들며 삶이 찌거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던 관절과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사용하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생활 속에서 수건을 활용해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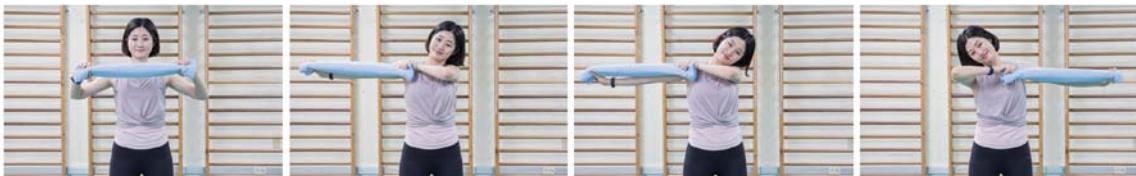


스트레칭 공통 주의사항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의 부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각 1분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1. 목-어깨 스트레칭 1

Tip 고개를 기울일 때 앞이나 뒤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① 수건의 양 끝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준다.
- ② 내쉬는 숨에 양팔은 오른쪽으로 뻗어주고 고개는 왼쪽으로 기울여준다.
- ③ 팔을 뻗은 쪽 목근육의 자극을 느끼며 7초 이상 유지한다.
- ④ 처음 자세로 돌아오면서 숨을 들이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준다.

Step 2. 목-어깨 스트레칭 2

Tip 수건의 팽팽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① 수건의 양 끝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준다.
- ② 들이쉬는 숨에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 이때 턱을 들어 올려 목 앞쪽을 길게 늘려준다.
- ③ 숨을 내쉬며 팔을 앞으로 뻗어준다.
- ④ 턱을 당겨 쇄골에 가깝게 하며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본다.

스트레칭은 여러 근육들의 이완으로 순환되지 않던 근육이나 근막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Step 3. 어깨-팔 스트레칭

Tip 팔꿈치를 머리 뒤로 위치하게 함으로써 가슴과 척추가 펴지도록 한다.



- ① 수건의 양 끝을 잡고 한손을 뒷머리에 다른 손은 허리에 댄다.
- ②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수건을 위아래로 당긴다.
- ③ 동작이 익숙해지면 수건을 조금 짧게 잡고 위아래로 당겨준다.
- ④ 팔의 위아래를 바꾸어 잡고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Step 4. 전신 스트레칭 1

Tip 수건을 팽팽하게 잡고 수건으로 몸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다.



- ①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린 후 수건을 골반보다 넓은 간격으로 잡아준다.
- ② 숨을 내쉬며 수건으로 몸을 쓸어내리듯 천천히 발끝까지 내려간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 ③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몸을 펴면서 팔을 위로 올려준다.
- ④ 팔을 뒤로 젖히며 몸을 쭉 늘려준다.

수건을 이용해 하루 한번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활동력을 되찾고, 건강한 천대선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Step 5. 전신 스트레칭 2

Tip 수건을 팽팽하게 잡고 몸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한다.



- ①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린 후 수건 양 끝을 잡고 만세 동작을 취한다.
- ② 숨을 내쉬며 하체를 고정한 채 몸을 좌우로 한 번씩 기울여준다.
- ③ 처음 자세에서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한 후 수건을 잡은 팔을 뒤로 젖혀준다.
- ④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며 숨을 들이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준다.

Step 6. 허벅지 뒤 근육 스트레칭

Tip 무릎은 무리하지 말고 펴지는 만큼만 하도록 한다.



- ①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무릎을 구부려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준다.
- ② 내쉬는 숨에 수건을 몸 쪽으로 당겨 무릎을 위로 펴주고 7초간 유지한다.
- ③ 숨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구부려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 ④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준다.

연속기획

스마트 개인보호구



김수근

의학박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스마트 개인보호구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스마트 산업보건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로 스마트 개인보호구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정의

안전화, 귀마개 및 보안경과 같은 개인보호구(이하 PPE)는 착용자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작업현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항상 중요했다. 공학적, 관리적 대책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PE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PPE는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PPE에 향상된 재료 또는 전자 부품을 사용하여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락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때로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때로는 이러한 측면 중 하나를 제공한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PPE와 스마트 요소의 조합이 이 새로운 유형의 PPE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요소는 보호 수준을 높이며, 따라서 PPE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적합성 평가 또는 기능성 시험이든 상관 없이 PPE를 시험할 때마다 스마트 PPE는 관련 이해관계자(예: 제조사, 인증기관, 관련 기관 또는 사용자)에 의해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향상된 재료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무릎 보호대는 종종 유연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러나 스마트 충격 흡수 재료는 부드럽고 유연하여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보호가 필요할 때, 충격이 가해지면 스마트 소재의 특성이 바뀌어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 PPE에서 '스마트'한 부분은 전자제품이다. 이 경우 스마트 PPE는 기존의 PPE(예: 보호의류)와 센서(sensors), 검출기(detectors), 데이터 전송 모듈(data transfer modules), 배터리(batteries), 케이블(cables) 및 기타 요소와 같은 전자 장치를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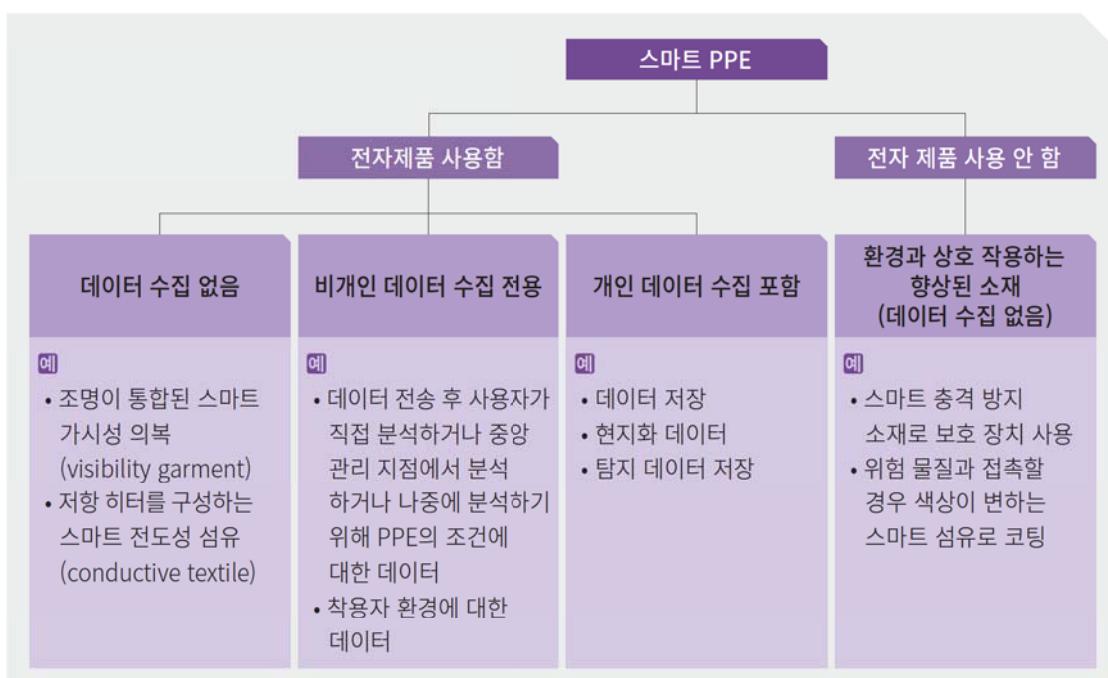
유럽표준화위원회(CEN)에서 스마트 PPE는 '주변/환경의 변화나 외부 신호/입력'에 대한 의도적이고 이용 가능한 대응을 보여주는 개인보호구이다.

스마트 PPE로 소개된 잘 알려진 예는 소방관을 위한 스마트 보호복이다. 소방관의 의복에는 다양한 센서가 통합되어 있어서 심박수, 혈압 및 체온과 같은 신체 기능을 측정한다. 이러한 자료로 해당 소방관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다. 소방관 주변을 관찰하는 다른 센서들은 유독ガ스를 감지하거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할당 후 보호 장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보호 수준이 여전히 보장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소방관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최적화하고 소방관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PPE는 착용자를 더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며, 때로는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PPE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분류

스마트 PPE에 대한 분류 체계가 [그림 1]과 같다. 스마트 PPE는 환경과의 일정한 상호작용 또는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림 1] 스마트 PPE의 분류

스마트 개인보호구의 이점

스마트 PPE는 안전모 등 착용 가능한 장비로 인터넷이나 블루투스에 접속해 착용자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웨어러블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건에 따라 조정하며,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스마트 귀마개(earmuffs)를 사용하면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고 스마트 안면 보호구(face masks)를 사용하면 가시성이 낮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스마트 기술 센서(tech sensors)는 냉각 및 가열 요소와 연결하여 신체 및 외부 온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착용자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스마트 PPE는 작업자의 신체와 작업환경 모두에 반응하여 작업자와 감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 PPE에 내장된 모바일 소형 모니터링 장치(mobile miniaturised monitoring devices)는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유해요인 노출, 스트레스, 건강 문제 및 피로에 대한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 잠금 장치(tech lockout devices)는 레이저 작동 중지 장치(laser enabled stop device)로 장비 관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보호복에 내장된 센서는 가스, 화학 물질, 열, 소리 및 충격을 포함한 환경 내 위험요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알릴 수 있다.

스마트 PPE는 이처럼 작업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에 맞춘 실시간 조언(real-time advice)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조직(organization)은 스마트 PPE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여 잠재적인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예측하고 조직 수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대책이 필요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블루투스(Bluetooth)는 스마트 PPE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장치에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며, 종종 다양한 PPE 웨어러블의 정보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스마트 PPE의 오작동 또는 잘못된 데이터 또는 조언 생성으로 인해 부상 또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한편, 스마트 PPE에서 생성 될 수 있는 많은 양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처리할 때 효과적인 전략과 시스템 및 윤리적 결정(ethical decisions)이 필요하다.

① 스마트 기술 안전모(Tech Helmets)

근로자가 GPS 칩이 내장된 스마트 기술 안전모를 착용하면 관리자가 대규모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안전모는 메타 센서(meta sensors)를 사용하여 정보를 평가하고 착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스마트 안전모는 충격, 낙하물, 온도, 습도, 밝기 등을 감지한다. 사업주들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안전모에 GPS 추적 시스템을 삽입하여 대형 건설 현장이나 인적이 드문 정유 공장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모는 경보장치가 있어서 위험한 장소에 접근할 경우에 착용자에게 경고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 위치 정보(location information)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스마트 보안경

스마트 보안경은 유해 작업 현장에서 기존의 보안경 이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착용자가 변화하는 데이터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렌즈 구석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보안경 내부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 보안경은 사람들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스마트 보호장갑과 안전화

스마트 기술 보호장갑은 작업 현장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스마트 보호장갑에 내장된 근거리 무선 통신 칩(Near field communication, NFC)은 사용자가 전화나 태블릿의 정보와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장갑은 기계와 통신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 인프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함에 따라, 근거리 무선 통신 칩에 의해 전송되는 데이터도 변경될 수 있다.

스마트 보호장갑의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은 사용자가 데이터 시트를 스캔하고 화학물질과 화합물의 유해 위험성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칩은 착용자가 위험 처리를 위해 보호장갑 또는 올바른 장갑을 착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안전 장갑은 제품의 스와이프 카드(swipe cards)처럼 동작할 수 있으며 착용자가 위험 지역에 진입하거나 교차 오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PPE의 칩은 착용자가 적절한 보호 없이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또한 안전화 밑창에 칩을 넣어 미끄러짐 위험과 같은 위험한 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착용자에게 신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 스마트 보호복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3-D 제스처 감지 기술을 통합하여 위험한 환경에서 물리적 접촉없이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결론

우리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자를 위해 안전한 장비를 찾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PPE를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스마트 PPE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착용자의 보호수준 향상과 PPE 사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스마트 PPE의 앞에 제기되는 과제는 표준 확립 필요성, 검사 및 인증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 워크 등 이해 관계자가 직면한 문제가 있다. 스마트 PPE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사용 경험으로 스마트 PPE는 향후 작업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달의 보건관리자

3월 표지모델 인터뷰

- 서강녕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보건관리자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 1997년 2월 11일 산업보건의 정의도 모른 채 입사하여 7,000여 명의 보건관리자로 근무 중인 서강녕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했던 시기를 지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 지 3월 1일이면 8,785일째가 됩니다. 10,000일 이후에는 전문가란 호칭을 들을 수 있겠지요?

Q2 2021년 직업건강협회지 3월호 표지모델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스튜디오에서 화사한 봄옷을 입고 더 밝은 모습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기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선배님께서 송구하고 후배님들에게는 부끄러운 얼굴이지만 협회지 표지 얼굴이란 작은 이정표 하나 찍게 되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기지개 켜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Q3 2021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근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사소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과 머리가 잠시도 쉬는 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21년도에는 다음의 내용만 이루어보고자 합니다.

- 첫째. 조던 피터슨, 벤 샤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친해지기 : 업무 관련 서적만 보면, 개인적인 삶의 논리와 가치관 판단 기준의 불명확함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순간 발견한 세 인물의 생각을 느껴보려 합니다.
- 둘째. 박사 논문 통과하기 : 딸보다 먼저 학위를 받고자 합니다.
- 셋째. 딸이랑 미국에서 한 달 살기 : 9년째 미국 생활 중인 딸에게 코로나 격리만 없어지면 바로 달려가려 합니다.
- 넷째. 모친과 함께 많은 시간 공유하기 : 짧은 시간이라도 얼굴 뵙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려 합니다.
- 다섯째. 명 때리기 : 선글라스와 라떼 한 잔과 함께 공원에 앉아있기
- 여섯째.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기 : 전년도에 개발한 유소견관리(뇌심혈관질환 포함) 프로그램과 특수검진(추후검사)가 연결되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건강검진 업무를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직업건강 우수사례

워라밸을 향한 '2go Health'



이현구

영남대학교병원 보건관리자

●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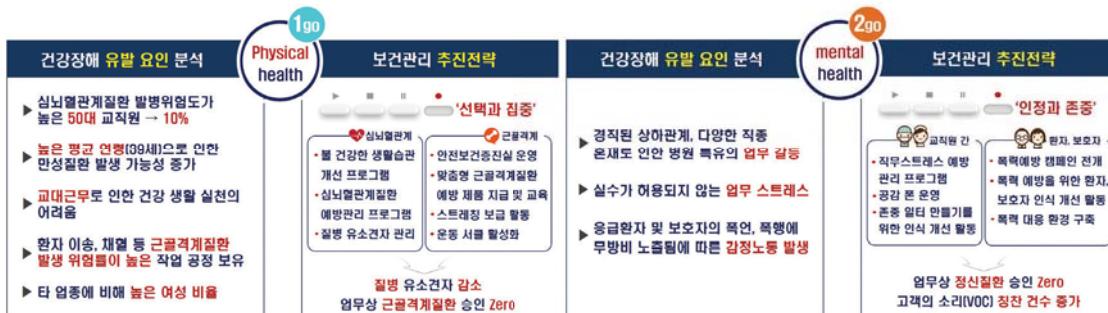
1 사업장 소개

영남대학교 병원은 1983년 설립 이후, 친절·봉사·협동의 원훈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으로 신뢰받는 영남 최고의 의료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25개의 진료과목, 975개의 병상을 바탕으로 일 평균 약 3,000 여 명의 외래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2,600여 명의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상의 진료와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보건 추진전략 및 체계

1 보건 중점 추진 전략

교대근무, 높은 여성 비율, 감정노동 등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장해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 교직원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 추진전략을 세웠으며, 안전보건팀을 필두로 한 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동내용

1 "1 Go, Good Physical health"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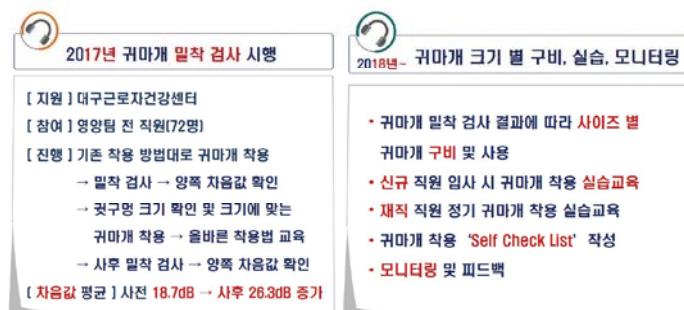
가. 전진하는 만보 걷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바일 만보기 앱을 통해 주 4일 이상 걷기 및 건강 미션을 실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지혈증 및 체성분 검사를 시행하여 선물 및 도수 카운트 등을 증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참여인원 증가 및 대상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나. 올바른 귀마개 착용 활동

병원 영양팀의 경우 업무 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대구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을 받아 착용법에 대한 검사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귀마개를 구매하여 난청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식겁게 먹기 운동

식습관 개선을 돋기 위해 영양팀 주관으로 표어 공모전, 절반 크기의 그릇 사용, 염도 계시, 저염 소스를 이용한 신 메뉴 개발 등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교직원 식당 이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① 식겁게 먹기 표어 공모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5명)
→ 상금 및 포스터 게시

② Half 국 그릇 사용

기준 Half

③ 교직원 식당 내 국 염도 계시

오늘의 염도는?
기준 국 염도
기준 국 염도

④ [식겁게 먹기] 메뉴 개발

저염 소스 8종 개발
저염 소스 이용 메뉴 개발

라. 심뇌혈관계질환 관리 프로그램

심뇌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금연 클리닉, 절주 캠페인',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병 유소견자를 관리하였습니다.

'이동 금연 클리닉-6개월!!'

[지원] 대구남구보건소
[내용] 금연 수행도 평가, 금연 보조제, 금연침 시술, 행동요법 교육, 전화상담, 알림 톡,
6개월 금연 실천 시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제공
[실천율] 2017~2018년 33.3% (9명·3명)
2018년~2019년 18.2% (11명·2명)

'절주 캠페인'

[지원] 대구서부중络관리통합지원센터
[내용] 알코올 종독 자가진단검사 및 음주 상담
알코올 폐해 사례 매달 전시
기상 음주 체험, 술 따라 길 따라
[참여] 46명 → 26명 알코올 종독 잠재 위험군

찾아가는 맨투맨 건강상담

건강상담 시간 조율 후 근무시간 내 방문, 리플릿 등 제공

카카오톡 병원 채널

챗봇을 통한 비대면 상담
SNS를 활용한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콜레스테롤 등 추적검사

소요시간 3분 TC,TG,HDL,LDL 결과를 한번에
data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신청 및 제공

【주증】 안전보건증진실
【주말, 야간, 공휴일】 병설약국
6종 의약품, 월별 data 관리

마. 근골격계질환 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파라핀베스, 어깨안마기, 하지공기압치료기, 전신안마의자 등을 구비한 '안전보건증진실'을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였으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압박 스타킹과 손목 보호대 등의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동 서클 활동을 장려하고 자체 운동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 "2 Go, Good Mental health" 활동

가.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직장 내 혹은 환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토닥토닥 내 마음, 내 마음 토크 토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파악 후 이를 개선하는 '찾아가는 이야기 보따리', 직원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이 '공감 폰'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찾아가는 이야기 보따리'

- 5~9월, 55개 근무처, 총 433명 참여
- 진행
 1. 피켓과 함께 보건관리자가 부서 방문
 2. 포스트잇 뒷면에 [동료, 상사]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작성하여 피켓에 부착
 3. 이야기 취합 및 '찾아가는 이야기 보따리' 보드 제작하여 근무처 전달.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활용
 4. 전 직원 대상 보따리 속 듣고 싶지 않은 다빈도 이야기 공지





똑바로 안 할래?
이것 밖에 못하나?

다빈도 이야기

나. 고충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실

업무 시 발생하는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실을 개설하였으며, 전담 간호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폭력 대응 체계 매뉴얼 구축, 신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 신고 전용 전화를 신설 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사적 Boom Up 활동

'직원 전용 야구장 관람석 운영', '동고동락 행복 워크숍', '한마음 산행 대회'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1회 간호사 년 차 별 소진 방지 연수



Samsung LIONZ Park
직원 전용 관람석 운영

- 간식비 지원
- 부서 관람 사진
-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



사무 행정직의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동고동락 행복 워크숍'



신규 간호사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실 마련 및
2명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라. 존중 일터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상호 존중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다크를 던져라', 퀴즈 이벤트, '슬로건 & 4행시 공모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방 교육 실시, 업무용 PC 화면 보호기를 통한 포스터 등재, 사업장 내 배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보이는 곳마다'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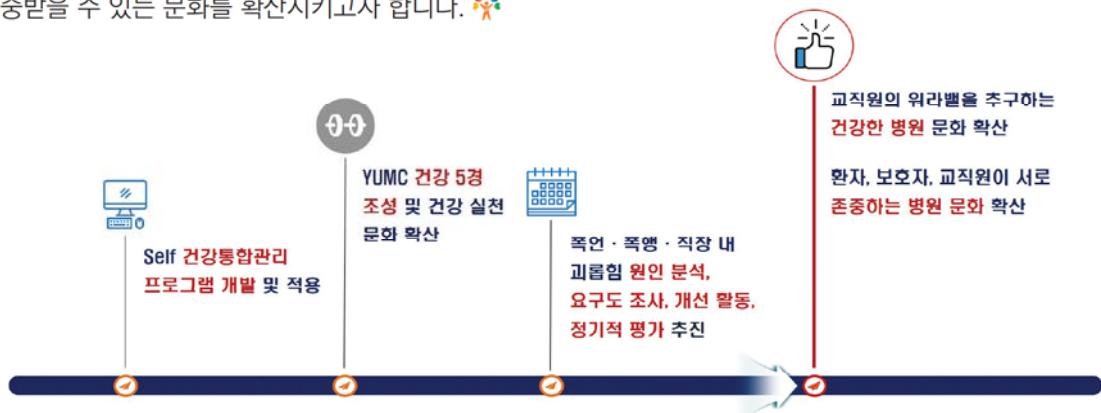
사업 추진 결과

'2go Health'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 질병 유소견 건수 및 근골격계질환이 감소됨을 볼 수 있었고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불만보다 높은 칭찬 건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에는 건강통합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건관리 활동에 적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장 내 문제들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교직원들이 건강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직업건강 Q&A



“새로 시행되는 MSDS 제출제도의 내용”

Q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6일부로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MSDS 제출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A

이번 개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MSDS 내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MSDS를 제출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률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MSDS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비공개 정보 승인 심사를 신청할 때 구성성분, 함유량 및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사가 제품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외 제조사가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 등의 업무가 모두 안전보건공단에 위임이 되어 관련된 서류를 제출 시에는 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영업비밀과 관련된 성분 정보(명칭 및 함유량)를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먼저 비공개 정보 승인 신청 후 그 결과가 반영된 MSDS를 제출해야 한다.

21년 1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MSDS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별로 5년 내에 아래 표와 같은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이 이루어져 신규로 작성된 MSDS는 제조하거나 수입 전에 제출해야 한다. MSDS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수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MSDS 작성시기		제출시기		
2021.1.16 이전 작성된 MSDS	연간 화학물질 제조 수입량	1,000톤 이상	2022.1.16. 이내 제출	
		100 ~ 1,000톤	2023.1.16. 이내 제출	
		10 ~ 100톤	2024.1.16. 이내 제출	
		1 ~ 10톤	2025.1.16. 이내 제출	
		1톤 미만	2026.1.16. 이내 제출	
2021.1.16. 이후 MSDS 신규작성		제조 수입 전 제출(연간제조수입량 무관)		
2021.1.16.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제출		

직업건강연구동향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고찰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20년 11월)

하영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한상미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초빙교수

● 목적

우리나라 고용노동부(2020)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트라우마 등의 유해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20년 5월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사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국내 연구를 통합적으로 문헌고찰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이해하고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연구방법

Whittemore와 Knafl (2005)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의 절차에 따라 5단계(문제규명, 문헌검색, 자료평가, 자료분석, 자료제시)에 걸쳐 수행하였다.

● 결과

본 연구에서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국내 연구는 총 14편이었다. 논문의 출판연도는 2010년 이하 2편(14.3%)이고, 2010년 이후에 12편(85.7%)이었다. 대상 문헌 14편은 서술적 및 상관관계 연구가 100.0%였다.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와 같은 근로환경, 불건강행위 혹은 건강증진행위, 기타 개인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 결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건강 고위험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상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이나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취약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장소이므로(WHO, 2019), 사업장 기반 다양한 정신건강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건강센터가 전국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주요 도시 근처에만 위치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지별, 업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건강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재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센터 소개

경기서부 보건안전센터

노경진
경기서부 보건안전센터 센터관리자

1. 경기서부 보건안전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서부 보건안전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산, 시흥, 안양, 군포, 광명, 과천, 의왕 등 경기 서부관할 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상질병 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건강위험근로자 집중관리사업, 폐수배출시설 보유사업장 밀폐공간 실태조사, 옥외근로자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사업, 대면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실태조사 및 개선지도 등의 사업을 등을 통한 집중적인 방문지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협동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진행 도중 언제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관리자와 수행요원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하여 모두 같이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 모두 누가 먼저이고 나중일 것이라는 생각보다 항상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센터를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 2021년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업의 변화와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자체 세분화적인 계획을 수행요원들과 협조하여 세우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고민해서 부탁을 드려도 항상 “한번 해보자”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모든 업무 힘든 내색 없이 잘 수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관리자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인생 선배이시고, 가족 같은 분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

전국 산업보건단체 소개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체유래물¹⁾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오직 개인의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서만 구득이 가능한 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 등은 비영리 공공재로서 공적으로 관리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신체의 일부로서 이를 채취하여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인체조직 기증은 신체장애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뇌사 혹은 사후에 내 몸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 나눔으로 한 사람의 기증을 통해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다.

 뼈 기증된 뼈는 골육종(뼈암)을 비롯한 뼈 손상으로 뼈 이식 재건수술이 필요하거나 치과질환, 외상 또는 인공 관절수술 등 뼈 결손이 심한 경우에 이식되어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피부 기증된 피부는 각종 사고로 화상을 입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이식되어 새살이 돌아나게 합니다.
 근막 기증된 근막은 인대재건술, 개두술 및 경막결손, 복막결손 시 이식되어 인체조직의 재생을 돋습니다.	 심장판막 기증된 심장판막은 심장판막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이식되어 제2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인대 및 건 기증된 인대 및 건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중 에기치 웃한 사고 등으로 손상이나 결손 시 이식되어 관절의 기능을 재생시켜 줍니다.	 연골 기증된 연골은 골육종(뼈암) 등으로 인한 관절 및 뼈질환 연골 손상 시 이식되어 강해 없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합니다.
 혈관 기증된 혈관은 심혈관질환이나 경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양막 기증된 양막은 각막 손상이나 난치성 안표면 질환으로 앞을 보지 못 하는 환자에게 이식되어 빛을 찾게 합니다.

인체조직을 공익적으로 관리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출범

장기와 인체조직은 동일한 구득 과정에도 불구하고 구(舊) 한국장기기증원과 구(舊)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각각 기증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장기와 인체조직의 이원화된 구득체계를 통합하고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안전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장기·인체조직 통합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같은 해 6월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적관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kptb.kr, 이하 '공공조직은행')이 출범하였다.

1)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DNA·RNA·단백질 등을 말한다.

공공조직은행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굴한 인체조직 기증자를 연계 받아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의 조직 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상품화를 방지하고 기증자의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공공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예를 갖춘 후 인체조직을 채취하여 각 조직별 안전성 검사를 수행한다. 채취된 인체조직은 격리기간을 거쳐 안전하고 적합한 인체조직만 가공처리 되며, 최종 생산된 인체조직 이식재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

[표 1]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의 과정

업무	담당 기관	주요 내용
인체조직기증 의사 접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증자 발생 시 기증 코디네이터 출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합콜센터 1577-1458 (24시간)
기증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증 코디네이터의 가족 상담 후 기증 동의서 작성· 한국공공조직은행에 기증자 연계
인체조직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 요소를 예방하여 인체조직 채취· 염습·입관 등 기증자 예우 후 인도
인체조직 가공 및 보관	한국공공조직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조직의 가공처리 및 안전성 검사· 의료관리자의 분배 적합성 판단 후 이식재 보관
인체조직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분배· 한국공공조직은행 통합콜센터 1577-8640
인체조직 이식	각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치료에 인체조직 이식재 사용

전국적인 채취 수행과 가공 전문 조직은행의 운영

공공조직은행은 채취 조직은행 5곳(서울성모조직은행, 분당차조직은행, 건양대조직은행, 빛고을전남대조직은행, 양산부산대조직은행), 가공 조직은행(성남조직은행) 1곳 등 전국 6곳의 산하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개소한 가공 전문 조직은행인 성남조직은행은 5곳의 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의 가공처리 및 보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는 거점센터로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이식재를 분배한다.

이식재의 자급자족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고령화 및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체조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생명나눔문화 미정착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저조하여 2019년 기준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 가공한 이식재 수량은 국내 유통량의 13%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대형 사고나 재난 등으로 수출국의 인체조직 긴급 수요 증가 시 수출량 감소로 국내 인체조직 수요 충당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조직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 이식 수요는 있으나 영리조직은행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필수 이식재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 이식재를 생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분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이식재 공급을 통해 의료진이 최적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신규 이식재의 개발 및 이식재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이식재 분배 확대

공공조직은행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의료계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체조직 기증은 생의 끝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나눔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제 인체조직 기증이 확산되어야만 비로소 국내 이식재의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생명 나눔을 통해 구득한 인체조직을 필요한 환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배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국내 이식재의 분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국내 이식재 사용 독려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진이 보다 많은 환자의 치료에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 이식재를 사용하여 하루 빨리 이식재의 자급 자족을 이루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나누고자 한 기증자의 마음을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안전하게 가공하고 분배하여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전 직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공공조직은행이 세계적인 수준의 인체조직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한국공공조직은행 산하 조직은행 분포노



▼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에 출동하여 채취 진행



▼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모습



▼ 채취 전 기증자를 위한 묵념



국내직업건강정보 1

중대재해처벌법 공포(2021. 1. 26)

● 제정이유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구분	내용
처벌 대상 및 내용	<p>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p>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망자 발생 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내직업건강정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021. 2. 1)



○ 개정이유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훈련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을 장해등급 등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1년 → 3년으로 변경]

-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 기존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있어,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있었음.
-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임. 

해외직업건강정보

코로나19에서의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의 조정 기준

지난 1년이 넘도록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동 제한, 학교 및 기업의 폐쇄, 특정 지역에서의 격리 및 국제 여행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4월 16일,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조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 기준은 고용주, 근로자 및 그 대표자, 노동조합, 지역의 공중보건 및 노동당국, 산업안전을 포함한 직장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표준 운영절차 개발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일반(비 의료) 직장 환경에서의 근로자를 위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모든 직장에서의 조치

직장 내에 있는 고용주, 관리자, 근로자, 고객 및 방문자 등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한 보편적인 조치는 아래와 같다.

① 손 위생

- 일 시작 전, 식사 전, 근무교대 중, 특히 동료나 고객과 접촉 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분비물, 배설물 및 체액을 접촉한 후, 잠재적으로 오염 된 물건(장갑, 의복, 마스크, 사용한 티슈, 폐기물)과 접촉한 후 그리고 눈·코·입을 만지기 전에 장갑과 기타 보호 장비를 벗은 직후 정기적이고 철저하게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세정제로 손 위생을 할 것.
- 손 씻기 및 손을 문지르는 디스펜서와 같은 손 위생 장소는 근무 장소 주변에 눈에 잘 띠는 곳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 고객 또는 방문자가 손 위생을 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함.

② 호흡기 위생

- 직장의 모든 사람들은 호흡기 에티켓을 장려할 것. 직장에서 콧물이나 기침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용 안면 마스크와 종이 티슈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한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또는 얼굴을 가리는 정책을 개발할 것. 만약 근로자가 아프면,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직원 또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용 마스크를 제공할 것. 정부 정책 또는 개인적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과 관리 및 폐기 방법이 매우 중요함.

③ 물리적(신체적) 거리두기

- 사람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사람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예: 포옹, 접촉, 악수)을 피하며, 외부와의 접촉과 대기행렬(바닥과 장벽에 표시)을 엄격히 통제할 것.
- 건물 안 사람들의 밀도를 감소시킬 것(10m²당 1명 이하). 근무 장소와 출입구, 승강기, 식품 저장실 및 식당, 계단, 직원 또는 방문자, 고객들의 모임 또는 대기 장소 등의 공간은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물리적(신체적) 공간 필요.
- 물리적 회의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것(즉, 원격 회의시설 사용).
- 출입구와 같은 공용 공간에 직원들이 붐비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혼잡을 피할 것.
- 교대근무를 하거나 팀 분할 배치 또는 재택근무를 강화할 것.
- 천목모임을 포함한 접촉이 있는 직장 행사는 연기하거나 중단할 것.

④ 업무관련 출장 관리

-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지역으로의 출장(비필수적인)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출장을 반드시 가야하는 직원에게는 손 소독제를 제공하며, 출장여행 기간 중 아프면 접촉(연락)할 수 있는 정보와 출장여행 지역의 지침을 따르도록 조언할 것.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에서 복귀한 직원은 14일 동안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1일 2회씩 체온을 측정하며, 만약 몸이 좋지 않다면 집에 머물면서 자가 격리를 하며, 의료인에게 진찰받을 것.

⑤ 정기적인 환경 청소와 소독

- 비누 또는 중성세제, 물과 기계적 작용(브러싱, 문지르기)을 이용한 청소는 표면에서 먼지, 부스러기 및 기타 물질들이 제거됨. 세척과정이 완료된 후 소독은 표면에 있는 병원균 및 기타 미생물 비활성화(사멸)를 위해 이용함.
- 접촉이 많은 표면은 우선적으로 소독해야 하므로 식별이 필요함(문과 창문의 손잡이, 조명 스위치, 주방 및 음식 준비 영역, 욕실 표면, 화장실 및 수도꼭지, 개인용 터치스크린,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 및 작업 표면).
- 소독을 하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침, 개인보호 장비사용, 다양한 화학소독제 혼합 방지를 포함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항상 소독제를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내 작업장에서 직접 스프레이하는 외부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없고 눈, 호흡기, 피부 자극 및 기타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 분사를 통한 환경 표면 소독제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실외 작업장에서 대량 스프레이 분사 또는 훈증소독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함.
- 어떤 상황에서도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⑥ 위험한 대화, 훈련 및 교육

- 근로자들에게 포스터, 비디오 및 전자 게시판을 제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장에서

안전한 개인 방역을 장려하며, 근로자의 예방 및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함.

- 정부기관 및 WHO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대응하도록 함.
- 비공식 경제(고용의 공식적 구조 밖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받는 노동의 분류), 이주 노동자, 가사 노동자, 하청 근로자 및 자영업자,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 집단을 접촉하고 참여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⑦ 코로나19 환자 관리

-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19와 일치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집에 머물면서 자가 격리하고, 의료인 또는 지역 코로나19 정보센터에 연락하여 검사 및 의뢰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함.
- 지역사회 전파가 높고 업무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가능한 원격진료 상담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아픈 근로자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의무기록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모든 근로자는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체온을 측정해야 함.
- 직장에서의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조치 및 서로간의 위험한 대화의 맥락에서 고려하여야 함.
- 직장에서 아프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준비해야 함. 해당 되는 대상자를 격리실에 배치하고,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며,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 및 청소 및 소독을 수행.
- 대상자의 접촉 추적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당국에 연락하고 출석(참여) 및 동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와 직장에서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은 WHO 권고에 따라 마지막 접촉 시점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함. ☺

참고문헌: Considerations in adjusting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WHO 2020)

신간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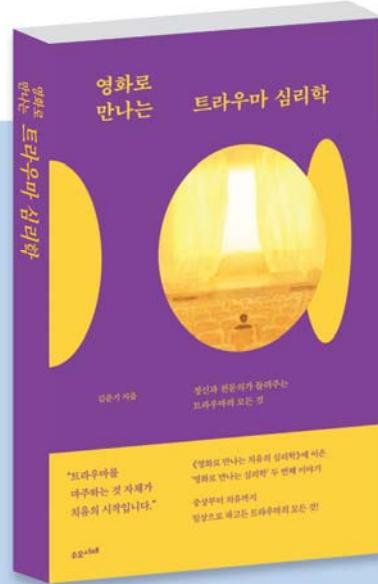
영화로 만나는 트라우마 심리학

”

저자: 김준기

출판사: 수오서재

2021년 1월 21일 출간



(출판사 서평 중에서...) 증상부터 치유까지, 일상으로 파고든 트라우마의 모든 것! 트라우마 기억은 일반적인 기억과 어떻게 다를까? 왜 유독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트라우마 기억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의 저자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라우마 전문가 김준기 의사가 '영화로 만나는 심리학' 두 번째 이야기인 『영화로 만나는 트라우마 심리학』을 펴냈다.

이 책은 트라우마의 정의부터 종류와 증상까지 트라우마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한다. 실제 저자의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들의 사례들과 함께 멜로, 드라마, 액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25편의 영화를 다루고 있다. 스몰 트라우마부터 빅 트라우마, 아동기 트라우마부터 전쟁 트라우마까지, 트라우마의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한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아가 성장하는 과정은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트라우마의 치유가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저자 : 김준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라우마 연구자이자 식이장애 전문가. 폭력이나 폭행, 강간이나 성폭력, 학대, 방임, 끔찍한 죽음의 목격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지닌 환자들을 25년간 만나고 진료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그는 마냥 유쾌할 것만 같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조차 인물들이 겪는 미묘한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곤 했으며, 영화를 통해 트라우마를 설명하고 내담자들의 이해를 돋고자 노력해왔다.

25편의 영화 이야기와 함께 트라우마의 증상과 종류, 치유의 과정까지 담아낸 이 책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곁에 있는 이들, 트라우마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료원 정신과에서 수련한 그는 현재 식이장애 클리닉 '마음과 마음' 원장, 서울EMDR 트라우마센터 센터장, EMDR Institute Trainer 및 국제 EMDR 협회 공인 치료자, 한국 EMDR 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EMDR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트라우마,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할 때』, 『복합 트라우마와 해리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탑뉴스 협회소식

제27차 정기 회원총회 개최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는 2월 26일(금), 협회 6층 교육장에서 '직업건강협회 제 27차 정기 회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해선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함께 김민호 고양고용노동지청 과장의 '2021년 산업보건 정책방향' 특강이 진행되었고, 이어 2020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었다. 🌟



협회소식

근로자 건강센터 소식



전주근로자건강센터(2월 8일)

전주 나노솔루션 근로자 대상
사후관리 진행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2월 9일)

사회복지사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남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2월 22일 ~ 23일)

전직원 기본응급처치강사과정 및
기본심폐소생술 자격 취득



전주근로자건강센터(2월 24일)

완산교통 근로자 대상
내방프로그램 진행



대구근로자건강센터(2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 홍보 및
센터 투어



대구근로자건강센터(2월 26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협의

협회소식



충남금연지원센터(2월 2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한국NSK)



충남금연지원센터(2월 4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유니슨HKR)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2월 8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남양주 다산행복주택)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2월 18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도천축협 육가공사업단)



협회소식

교육 소식

교육 일정표

교육 과정	4월	5월	6월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5-9 19-23	10-14 24-28	7-11 21-25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6-9(4일) 21-23	11-14(4일) 26-28	8-11(4일) 23-25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12-16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14-16		2-4
전문화교육			
감정노동관리	1-2(2일)		
심리상담 실무			16-18(3일)
직무스트레스 관리	26-28(3일)		
근골격계질환 관리	29-30(2일)		14-15(2일)
직업건강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과 작업환경관리			2-4(3일)
화학물질관리			
직장인 건강증진 실무길잡이			
트라우마 관리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및 의약품관리			
작업 관리			28-30(3일)

보건관리자 신규교육(온라인 혼합) 개설 : 4일 과정(24시간)

구분	1일	2일	3일	4일
교육시작	14:00	9:00	9:00	9:00
교육종료	18:00	18:00	18:00	13:00

보건관리자 보수교육(4일 과정) 개설 증대

2021년 전문화교육 안내

1. 트라우마 관리 전문화교육(신설)

사업장 근로자의 트라우마 관련 증상과 사례를 학습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 상담능력을 갖춘다.

프로그램: 산업재해 현황/트라우마의 정신의학/트라우마의 뇌과학/근무현장에서의 트라우마 사례/트라우마의 증상 진단 및 실습/트라우마 및 산업재해 관련 법령/직업현장에서의 트라우마 응급대처/범죄 심리학 및 피해자 대처법/트라우마 대처 상담 및 실습/근무현장에서의 트라우마 대처 매뉴얼 실습/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2. 작업관리 전문화교육(신설)

인간의 신체기능 및 감각과 작업 능률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작업환경을 설계하고 관리한다.(*관련 자격증: 인간공학기사)

프로그램: 인간공학개론/인간의 감각기능 및 정보처리/직업생리학/작업환경 평가 및 관리/산업심리학/산업관계 법규/안전보건관리/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 및 분석/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측정 및 개선/작업관리

3. 직장인 건강증진 실무길잡이 전문화교육

음주, 금연, 영양, 운동, 정신건강 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건강증진법/건강증진이론 및 건강증진 사업장 인증기획과정/금연방안 추진전략/음주폐해예방/생활습관병 관리/직무스트레스 관리/건강증진 사례/운동 실천 방안 추진 전략/영양관리 및 비만관리 추진전략/정신건강관리/직장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4. 감염병 관리 전문화교육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법 및 대처법을 학습한다.

프로그램: 감염병 관리 관련 법령/감염병 역학조사/혈액매개감염병 관리/결핵 관리/호흡기계 감염병 관리/소화기계 감염병 관리/해외 출장 근로자의 감염병 관리/사업장의 감염병 관리 및 대처방안/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예방접종/사업장의 감염병 관리 사례/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5. 만성질환 및 의약품 관리 전문화교육

암, 순환기질환, 치주질환, 피부질환 등 만성질환의 종류와 증상, 관리법을 알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프로그램: 암 진단 및 관리/순환기질환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당뇨병 관리/안질환 관리/호흡기 질환 관리/간질환 관리/치주질환 및 구강질환 관리/피부질환 관리/일반의 약품의 이해 및 관리/외용제의 올바른 사용법/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약품 사용/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6. 근로자 심리상담 실무 전문화교육

심리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지식, 대화기법을 학습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과정)

프로그램: 심리상담 이론/정신분석이론/심리검사 및 활용방법1/심리검사 및 활용방법2/심리검사 및 활용방법3/상담의 대화기법과 적용/상담기법의 활용/성격심리이론/상담기법/상담자의 역할

7. 산업보건관리 전문화교육

사업장 작업환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환경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기획, 수행, 지원하는 능력을 양성한다.(*관련 자격증: 산업보건지도사)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위생개론/인간공학 및 작업관리/보호구 관리/위험성 평가/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산업심리학1/산업심리학2/작업장 안전관리/직업병 관리/작업환경관리/산업보건관리

8. 감정노동관리 전문화교육

감정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지식을 학습하고, 감정 노동이나 직무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진단, 고객대응전략 수립, 관리매뉴얼 수립 등 감정 노동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감정노동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과정)

프로그램: 감정노동의 이해/감정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감정노동자 보호 방안/감정노동과 감성 역량/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고객 대응 전략 및 관리/감정노동 해결 방법/감정노동 관리 방법/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감정노동관리의 실제/감정노동관리 프로그램의 활용

9. 직무스트레스관리 전문화교육

직무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검사 및 측정하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여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무스트레스관리사 민간 자격증 발급과정)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의 이해/스트레스와 건강/직무스트레스의 측정 및 평가/직무스트레스의 조직적 관리방법/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검사의 이해/직무스트레스 관리 우수사례/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기법/직무스트레스의 개인적 관리방법/직무스트레스 관리

10. 산업위생과 작업환경 관리 전문화교육

산업위생 및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여,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사)

프로그램: 산업위생개론/인간공학/산업안전보건법령/직업성 질환 및 실내 환경 관리/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유해 인자 측정, 평가 및 통계/산업환경/작업공정 관리 및 개인 보호구/물리적 유해인자 관리/산업독성학/작업환경관리

11. 화학물질관리 전문화교육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법령, 취급방법 등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프로그램: 화학물질 관련법령/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사례 및 직업병 사례/화학물질의 분류와 MSDS 제도/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화학물질의 이해/생식독성물질의 특성과 관리방법/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제/화학물질 관리/작업환경 관리 대책/보호구 착용 및 유지 관리/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12. 직업건강관리 전문화교육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한다. (*직업건강관리사 1급 자격증, 교육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과정)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개론 및 건강관리실 운영/근로자 건강진단 및 관리/작업환경관리1/작업환경관리2/뇌심혈관계질환 관리/직무스트레스 관리/근골격계질환 관리/직업병 관리/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건관리자의 역할

13. 근골격계질환 관리 전문화교육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한다. (*스트레칭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과정)

프로그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법적 기준/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인간공학적 측정방법/근골격계 유해요인 개선대책/근골격계질환 개요/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이완요법/스트레칭의 이해/스트레칭 실습1/스트레칭 실습2/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직무교육(신규, 보수) 및 전문화교육”

인터넷 신청방법

□ 직무교육

1.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메인 창 우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의 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① 회원가입 대상 ② 회원가입 안내 ③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휴대폰 or 아이핀)
④ 개인정보 입력 ⑤ 산재보험 가입정보 및 선임정보 입력 ⑥ 가입완료

3. 로그인 후 “직무교육신청” → “수강신청” 선택합니다.
4. ① “기관별” 클릭 한 후 ② “직업건강협회”로 기관 선택하여 ③ “검색”을 클릭한 후 들으려는 교육 과정의 우측 하단 ④ “신청” ⑤ 계좌이체용 입금계좌 확인 및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5. 수강신청 확인 및 관련문서는 홈페이지 상단메뉴 “나의 강의실-교육신청 확인/취소”에서 수강신청 확인 후 ① 참석공문 ② 교육장 약도 ③ 교육수강통지서 출력 ④ 훈련위탁계약서 ⑤ 시간표 출력 가능합니다.

공문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

① 참석공문 : 사업장에 제출해야 될 경우 등
② 훈련위탁계약서 : 환급과정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통장사본을 함께 직업건강협회에 제출(교육시작 2주전 까지)
- 팩스 02) 6008-9030, 이메일 edu.doc@kaohn.or.kr

□ 전문화교육

1. 협회 홈페이지 접속(www.kaohn.or.kr)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진행 후 로그인합니다.
3. 상단메뉴 “교육센터” → “특별교육”을 클릭합니다.
4. 좌측메뉴 “교육 참가 신청”을 클릭하여 현재 접수중인 전문화교육을 확인합니다.
5. 원하는 전문화교육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6. 교육비 카드결제 또는 계산서 신청은 교육 신청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 → “교육 신청내역”으로 이동하여 진행(계좌이체 납부는 교육안내공문의 교육비 납부계좌 확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건강협회 안내

| 주요 사업 |

보건관리자 직무 및 전문화교육

- 보건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 전문화 교육
- 직업건강관리사, 감정노동관리사 등 자격취득과정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 작업환경 상담



건강안전연구소 운영

- 보건진단
-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건강협회 안내

| 주요 사업 |

보건안전센터 운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지역금연서비스
- 사업장 금연 교육



마음건강힐링센터 운영

- 서포터즈단 및 힐링캠프 운영
- 심리상담프로그램 실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건강협회 안내

| 회원서비스 |

회원 권익옹호 및 장학금 지급



새내기 보건관리자를 위한 1004 멘토-멘티 프로그램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건강협회 안내

| 회원서비스 |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국제교류 및 해외 산업보건 연수



출판 및 홍보 자료 제작



• 건강안전연구소 보건진단 사업 안내 •

보건진단이란?

산업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성의 발굴과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진단기관에서 조사 · 평가하는 제도

진단의 분류

- 자율진단 –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 명령진단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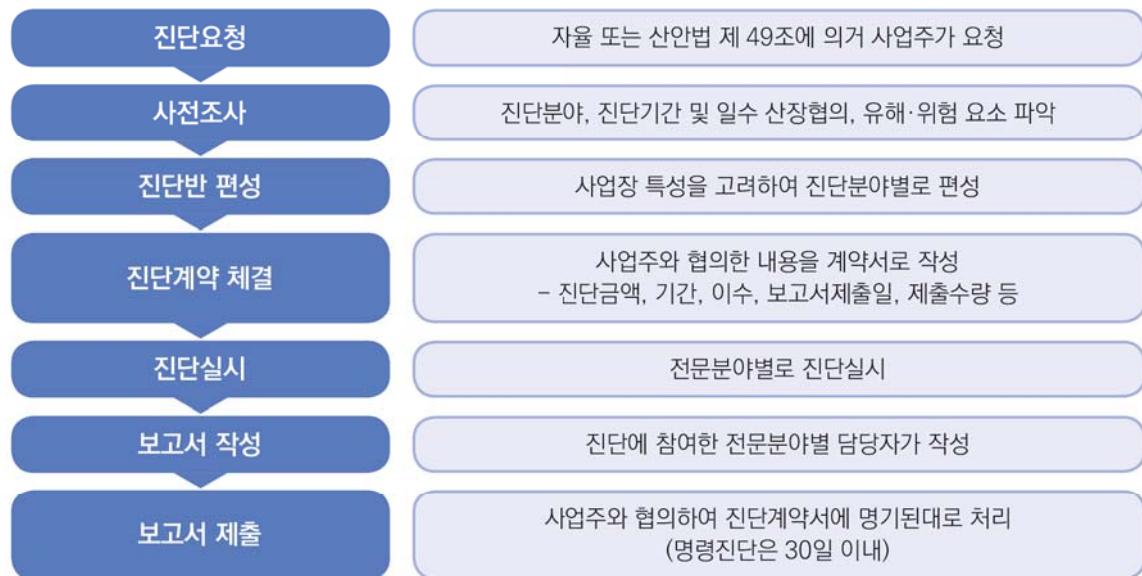
※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 내용 및 업무 처리 절차

〈진단 내용〉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허가 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 국소배기 장치에 대한 검사 및 개선방안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 관리, MSDS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필요한 사항

〈진단 업무 처리 절차〉



※ 최소 진단일수 및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 건강안전연구소 컨설팅 사업 안내 •

맞춤형 전문 컨설팅(자율진단)

〈목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 별 맞춤형 컨설팅 시행

〈기대효과〉

- 물리적, 화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대책 제시
-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 구축 지원
- 유해인자 및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인식 제고

위험성평가

1.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계획 수립 • 평가대상 선정 •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립
2. 유해위험요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순화점검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의 중대성 크기를 추정, 위험성의 크기 산출 • 결과와 현 사업장의 위험성 기준 비교, 위험성 크기 허용 여부 판단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른 대책수렴 및 적절성 검토 • 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추진팀/방침 설정	현황 파악	조사대상 선정
TF팀 운영	작업 분류	업무 유형 파악
〈검토 및 추진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
1. 진단 범위 선정	1. 조직 및 직무 파악	1. 근무특성을 가진 대표 작업물 그룹화
2. 추진 일정 및 방향 설정	2. 관련 조사 결과 및 치료 분석	2. 정면, 압면, 조립, 용접, 포장, 중량물 등 작업유형 분류
	3.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등 현 실태 및 문제점 파악	3. 대표작업군 목록화 및 대표적작업 유형 진단 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직업별 부서별 문제 요인 도출	유해작업 문제 요인 식별	신체 부담부위 개선점 포인트 선정
		개선안 도출
		선정된 작업 동영상 분석

유해화학물질 관리

문현조사 및 사례파악	
화학물질 독성정보 파악 및 목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 화학물질 대상 • 화학물질 DB 활용
작업장 내 유해인자 발생 및 노출 위험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 정밀 평가 • 현장 실측점 • 노출 관련 유해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개선안도출 및 중장기 관리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중장기 개선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리

1. 현황파악	2. 개선활동	3.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직무스트레스 측정 • 설문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파악 • 부서 및 직군별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에 따른 개선안 및 개선 활동 제시 • 상담 및 교육 •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청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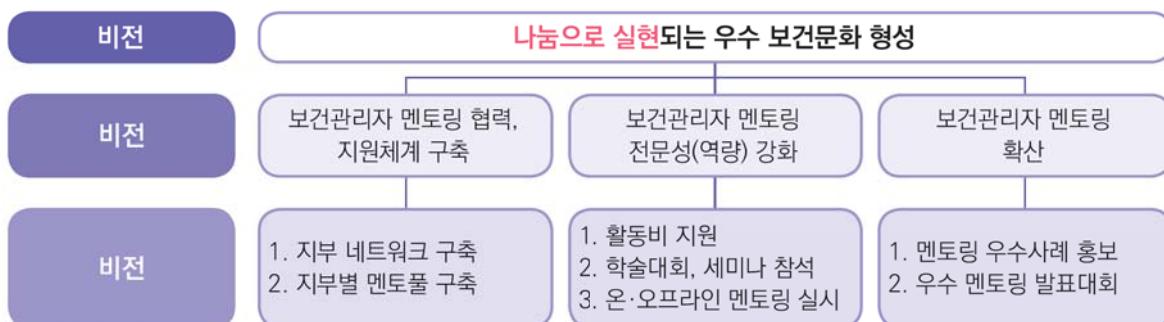
- 전화번호 : 032)668-9030/9020
- 팩스번호 : 032)655-0224

• 새내기 보건관리자를 위한 1004 멘토 프로그램 참여 안내 •

| 멘토링 운영 프로그램 |

1004 멘토 프로그램이란?

새내기 보건관리자를 위한 1004 멘토 프로그램은 개인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보건관리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신규 보건관리자를 1:1(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비전 형성을 돋고, 신규 보건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커플 지정 후 1년간 운영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멘토링 분야

- 근로자 보건교육
- 작업환경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증진
- 기타(공문서 작성 등)

멘토 신청 및 위촉

- 신청자격: 보건관리자경력 2년 이상인 회원
- 본인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위촉

• 새내기 보건관리자를 위한 1004 멘토 프로그램 참여 안내 •

멘티 신청 및 커플 지정

- 신청자격: 직업건강협회 회원 중 보건관리자 선임 1년 이내의 경우 우선 대상이며, 1년 이상인 경우 멘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가능
- 희망 멘토-멘티 커플 지정
- 추천 멘토-멘티 커플 지정

※ 지역에 관계없이 희망 멘토 지정 가능

멘토링 활동

〈오프라인 멘토링〉

- 정기 미팅 실시 : 1회/분기 또는 반기(식비 등 활동비 지원)
- 학술대회, 세미나 등 동반 참석(기념품 증정)

〈온라인 멘토링〉

- 메일, 전화, SNS 등을 통하여 상담 진행
- 학술대회, 세미나, 협회 교육자료 등을 공유

〈멘토-멘티 사업장 방문〉

- 사업장 방문 및 견학을 통하여 업무 전달
- 멘토링 활동자료 기록 공유

〈기타〉

- 멘토-멘티 활동 기록지 제출
-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우수 멘토링 시상 및 홍보

-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협회지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신청 문의

- 담당부서: 운영부
- 전화번호: 02)716-9011 / 02)586-2554
- E-MAIL: ona@kaohn.or.kr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종합 컨설팅

마음건강 힐링센터

마음건강힐링센터는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예방·관리,
관계갈등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 구직자 및 근로자의 마음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장 맞춤형 상담·교육·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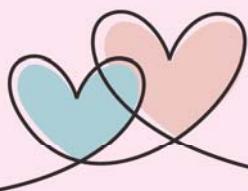
♡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주요내용

컨설팅/캠페인	교육	매뉴얼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포터즈단 구성컨설팅 및 캠페인지속적인 언론 홍보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감정노동 관리자 교육감정노동 근로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장 맞춤 매뉴얼 제작교육자료 및 설문지 개발감정노동자건강보호 10개명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별상담 및 집단상담힐링 프로그램힐링 캠프

♡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진행 절차

01 신청	02 사업장진단	03 운영	04 결과관리
신청서 접수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현황파악전문가 진단운영프로그램 구성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가 컨설팅 지원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평가힐링교육 지원소그룹, 힐링프로그램 지원	지속적인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로그램 결과 제공지속적인 사후관리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비용 및 프로그램 문의 : 02-3664-9609
- FAX : 02-716-9034
- 홈페이지 www.kaohn.or.kr
- 메일 mind@kaohn.or.kr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업건강협회 주소록

본부

부서	대표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대표전화	02-716-9030			
교육운영총괄전무	02-6008-9030			
사업총괄전무	02-582-9030			
교육부	02-3664-9669			
	02-718-9022			
	교육장 02-716-9022			
운영부	02-716-9011 02-586-2554	02-716-9034	066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22, 서은빌딩 4층 (교육장 : 5~6층)
홍보부	02-3664-9613 02-3664-9610			
사업부	070-7719-9960 070-4236-0257			
재무부	02-3664-9608 02-716-9056			
총무부	02-716-9055			

근로자건강센터

부서	대표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경산	053-853-8579	053-854-8579	3846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 7로 126 경산시 근로자 복지회관 2층
전주	063-211-9988	063-211-9986	5485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빌딩 2층
전남서부	061-462-2900	061-462-2902	5845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2층
대구	053-585-5501	053-585-5502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

금연지원센터

부서	대표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	031-924-9030	031-920-4999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검진동 6층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충남 금연지원센터	041-576-9030	041-579-903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과대학 항설의학관 519호

건강안전연구소

부서	대표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보건진단/산업보건 종합 컨설팅	032-668-9030	032-324-1068	1474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대로 39 송내코아빌딩 3층

마음건강힐링센터

부서	대표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관리 종합 컨설팅	02-3664-9609	02-716-9034	066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22, 서은빌딩 4층

보건안전센터

센터명	대표전화	Fax	우편번호	주소
서울	02-3473-5919 02-2055-2621	02-588-3821	04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4길 24 수정빌딩 5층
서울북부	02-701-9036 02-701-2981 02-701-2982	02-701-9033	04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4길 24 수정빌딩 5층
인천	032-422-1084 032-422-0788 032-422-3971	032-422-1085	215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17 오피앙오피스텔 B(102)동 904호
부천	032-422-1067 032-422-3972	032-324-1068	14543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77번길55-9, 4층 405호 (상동532-9, 태양프라자)
경기동부	031-756-0274 031-756-0234	031-756-0780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야탑동), 시그마3오피스텔 603호
경기서부	031-485-0090 031-401-4921	031-485-0091	154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64(초지동) 키즈타운2 305호
경기남부	031-223-5447 031-221-6146	031-238-6027	16571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번길 38 올림픽공원대우미래사랑 101동 706호
경기북부	031-876-4273 031-826-8436	031-836-4273	1167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제일퍼스트빌-3, 305호
대전	042-582-9052 042-535-9050	042-582-9053	3522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 20번길 14(월평동)
충남	041-543-8996 041-531-3627	041-532-8667	3116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7(불당동) 401동 2001호
충북	043-283-1728 043-285-9115	043-285-9116	28355	충청북도 청주시 층덕구 신선로 68 2층
대구	053-744-5412 053-741-9436	053-744-5414	42036	대구 수성구 만촌로 156 302호
대구서부	053-557-8313	053-557-8314	42446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남로 33-1
부산	051-515-9163 051-512-2921	051-514-0703	482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33(망미동430-7) 3층
울산	052-277-8624 052-277-8625	052-277-8626	4461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28 하늘빌동 3층
경남	055-221-0763 070-8871-0717	055-221-0762	5172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343(남성동247-8) 8층
경남동부	055-389-1412 055-389-1411	055-389-1413	50650	경상남도 양산시 동명 금오로 247(석산리) 402호
광주	062-972-2021 062-974-4818	062-972-2023	61977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99길 7, 2층
전남	061-285-7256 070-8871-0716	061-285-7255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282(남악리2113), 11층 (1104호)
전남동부	061-681-0670 061-861-0676	061-681-0660	59640	전남 여수시 무선6길24(선원동1233-12) 1층
전북	063-277-0081 063-274-9376	063-277-0082	5498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중화산동2가) 18-10 2층
제주	064-711-7823 064-711-9823	064-711-9825	63136	제주시 신대로 22길 25(연동 1373-1) 아일랜드마이빌 201호

직업건강협회 안내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1. 설립 일자

1994. 4. 11.

2. 설립 목적

직업건강에 관계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을 기하여 사업장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조직

1. 본부 및 전국 9개 지부, 22개 지회
2. 임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10인, 감사 2인
3. 회원: 직업건강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 면허소지자 및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

4. 주요 기능

1. 회원의 권리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2. 직업건강 및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업건강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직업건강 기술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직업건강 관련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6. 직업건강 업무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에 대한 건의
7. 직업건강 사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사항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1년 직업건강협회 회원등록 안내

1. 회원 및 회비 구분

구분		종류	자격	회비
정회원	직업건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사업장 회원	직업건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사업체가 회원임) ※ 회원 자격 승계 가능	연 25만원
		개인 회원	- 산업보건 유관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 교수 및 연구원	연 6만원
		평생 회원	- 개인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50만원 (연내 2회 분납 가능)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개인 회원	- 산업보건 유관기관 종사자 등 (간호사 제외)	연 6만원
		평생 회원	-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가능	50만원 (연내 2회 분납 가능)
		자료 회원	- 도서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연 30만원

2. 회원 등록 방법

-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700-951344 (※)직업건강협회
- 신용카드 결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정/특별회원가입) → 회원서비스 → 회원/회비규정 → 협회비납부
- 지로납부: 요청 시 우편 발송

4. 기타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영수)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후 전화 요망
 - 지로납부 신청 시 우편 받을 주소를 이메일로 전송
 - 회비입금 시 입금자명에 반드시 회원명(기관명) 기재
- ※ 전화: 02-716-9011, 팩스: 02-716-9034, 이메일: ona@kaohn.or.kr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회원가입 혜택

❖ 사업장 혜택

※ 사업장 홍보기회 제공

1. 직업건강우수사례발표대회 참가자격 부여

- 고용노동부 장관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직업 건강협회장상 등 수상 기회 제공

2. 각종 포상 대상 사업장 우선 추천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추천
- 직업건강협회 직업건강대상 포상
- 각종 포상 후보자를 발굴, 추천하여 개인역량 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보건관리 질을 높이고자 함

- 내부포상 : 창립기념 우수회원 포상, 직업건강 우수사례상(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한간 호협회와 연계하여 포상), 장기 근속자 포상 등
- 외부포상 :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보건의 날 포상 등

3. 라마다 호텔 제휴

- 라마다 서울, 송도, 이천 호텔 할인
- 직업건강협회 회원사임을 밝힌 후 전화 예약

❖ 보건관리자 특전

1. 산업보건 최신경향 정보제공

- 월 1회 '직업건강' 매거진을 통한 산업보건 관련 최 신경향 정보제공

• 관련 자료지원

- 직무지침서 배포, 개정된 법전 배포
- 건강정보 제공 : 홈페이지 정회원 전용 정보자료실 이용 가능
- 관련 법률 최신정보, 교육자료 등 제공

2. 보건관리자 간 최신정보 교류

- 지부 총회, 월례회 등을 통해 같은 지역 선후배 보 건관리자들과 인맥형성 및 최신정보 교류 활동
- 보건관리자 멘토링 시스템 : 멘토-멘티 신청 가능 (소정의 활동비 지원)

5. '직업건강' 협회지 무료 제공(연 6회)

- 연 6회 협회지를 무료 제공받아 직업건강 정책 바로알기, 직업건강 포커스, 보건의료상식, 직업건강 우수사례, 국내 및 해외 직업건강 정보, 화제의 인물, 세미나 · 워크샵 소식 등을 통해 직업건강 최신 정보를 무료 제공

3. 세미나 참가비 및 교재비 혜택 제공

- 직업건강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우수사례 경연대회, 학술대회, 기타 행사 등의 참가비 및 교재비 무료 혹은 할인 혜택 제공

6. 장학금 지원

4. 직무향상 자료 및 교육 지원

- 보건관리자 신규직무교육/보수직무교육 : 교육일정 문자 및 홈페이지 알림
- 민간자격과정 발급비, 응시료 할인 및 면제

7. 해외 산업시찰시 할인혜택 부여

- 해외산업시찰 프로그램 참여 시 협회 회원에게 할인혜택 부여

직업건강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20 년 연회원/평생회원)

1. 회원(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우()		
전 화 번 호	사무실(직통): (대표):	Fax:	
근로자 수	총 명	회원구분 ex) 사업장, 개인, 평생, 자료	
생 산 품		보건관리자 수	명
업 종		최근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연도	
회부납부방법	① 무통장 입금 ()	연회원 회비 납부일	20 . . .
	② 신용카드 결제 ()	평생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1차 납부일 20 . . .
	③ 지로 납부 ()		2차 납부일 20 . . .

2. 회원(담당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직통)	() -
입 사 일	산업간호 경력	년 개월
간호사 면허번호	E-Mail	
대한간호협회 가입	① 평생 (가입년도) ② 일반 (가입년도) ③ 미가입 ()	고용 형태 ① 정규직 () ② 무기계약직 () ③ 계약직 () ④ 기타 ()
학력	① 전문대 및 대학졸업 () ② 석사과정 및 석사졸업 () ③ 박사과정 및 졸업 ()	
기타 자격	① 산업전문간호사 () ② 직업건강관리사 () ③ 산업위생(산업)기사 () ④ 산업안전기사 ()	
취득 현황	⑤ 인간공학기사 () ⑥ 보건교육사 () ⑦ 심리상담사 () ⑧ 기타 ()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위의 자료를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안내, 협회 주요 행사안내, 차기년도 회원가입 안내, 보건관리자 활동상황 통계처리(개인정보 미기재)에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 안함()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직업건강협회장 귀하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716-9034) 또는 이메일(ona@kaohn.or.kr)로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업건강협회 Tel. 02-716-9011 Fax. 02-716-9034 E-mail. ona@kaohn.or.kr

(우) 0663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22, 서은빌딩 4층

광고 안내

❖ 「직업건강」 협회지 지면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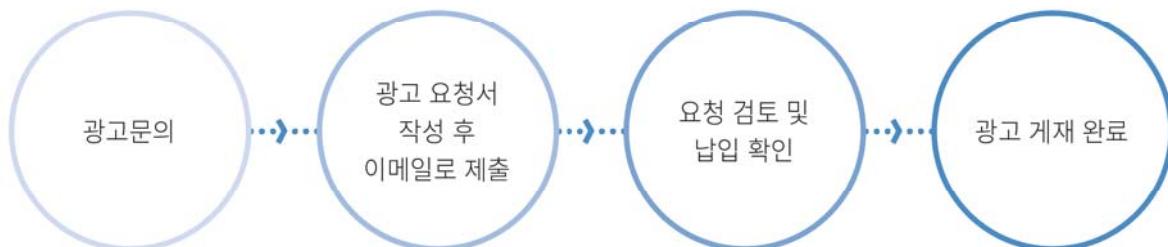
구분	광고 위치	광고 기간	금액(VAT 포함)
협회지 광고	협회지 내 2페이지 삽입	1년(연 6회 발간)	6,600,000

❖ 홈페이지 배너 광고

구분	광고 위치	광고 기간	금액(VAT 포함)
홈페이지 배너 광고	홈페이지 하단	1년(연 6회 발간)	4,400,000

* 광고 기간과 금액 협의 가능

❖ 접수방법



문의

직업건강협회 홍보부

Tel : 02-3664-9613 | E-mail : pr@kaohn.or.kr

직업건강협회 SNS 친구추가하고 정보받자!



SNS를 통해 **최신일정과 직업건강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밴드

네이버에서 직업건강협회 네이버밴드 검색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서 직업건강협회 네이버블로그 검색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직건협 검색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직업건강협회 검색



유튜브

유튜브에서 직업건강협회 검색



사내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시 안전 및 보건평가 안내



사내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평가란?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1.16.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장 내에서 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독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59조 : 도급의 승인))



유해·위험작업(도급승인) 안전·보건진단평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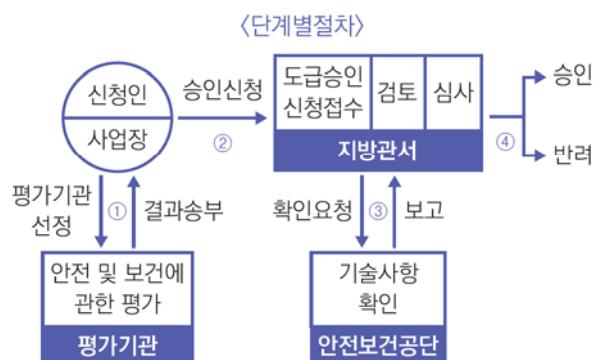
도급승인 대상작업	평가종류
·도금작업	보건평가
·수은,납,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보건평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함(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	보건평가
·중량비율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보건종합평가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평가내용(시행규칙 별표 12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평가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 절차



도급승인평가 업무위탁기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건강안전연구소

전화 032)668-9020, 9030 | E-mail hsl@kaohn.or.kr